

국제회의 전문기획사 선정에 관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국제회의 전문기획사 선정에 관한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서 평가) ① 연구원은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로 나뉘어 실시하되 2차 발표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업체에 대해서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의한 제안서 2차 발표평가는 기술평가 비중을 80%로 하고, 기술제안서의 항목별 평가표 기준에 따라 연구원에서 정한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의 가격평가는 그 비중을 20%로 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격평가점수=(최저제안가격/평가대상자 제안가격) × 가격평가기준(20%)×100
2. 최저 제안가격은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제안 가격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한다.

④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3조(협상대상자 선정) ① 협상대상자는 제2조에 의한 제안서 발표평가 및 가격평가 점수를 종합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되, 협상대상자 중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다만, 종합평점결과 70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안서 평가 결과 동일배점을 얻은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평가점수의 순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고,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부분 평가가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한다.

제4조(협상대상자 통보) 제3조에 의하여 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경우에 연구원은 협상대상자에 한하여 선정 결과 및 협상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협상내용과 범위) ① 연구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시안, 제안가격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거나 다른 제안자의 제안내용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

제6조(협상가격) ① 가격협상 기준가격은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들이 투찰한 가격을 산술평균 환산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의 가격이 평균가격 이하일 경우에는 협상대상자의 가격으로 한다. 단, 평균가격은 예정가격의 95%이하여야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1인 뿐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95%로 하며, 입찰가격이 낮은 경우는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연구원은 당해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금액을 제안한 협상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정가격의 95%로 금액을 조정하여 협상에 응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안서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제8조(협상절차) ① 연구원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기간 내에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연구원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우선협상대상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다른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한다.

제9조(협상결과에 대한 조치) ① 연구원은 협상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협상조건 및 내용을 수정하여 처음의 협상순서에 따라 재협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체결) 연구원은 협상이 성립되면 지체 없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안요구서 등 기타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11조(평가 및 협상결과의 미공개) 연구원은 제안서 평가 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끝.